

[별표]

각종 수당 및 비용 등의 지급기준

1. 사료평가위원회 등 각종 회의 참석 수당

- 기획예산처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운영비(210) ‘위원회 참석비’에 따름

2. 위탁수집비 및 위탁분석비

- 위탁수집비
 - 수집사료의 성격에 따라, 1일 150,000원 이내의 활동비 또는 유관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책정한 매수 당 가격에 따른 비용 지급
 - 사료조사·수집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숙박비, 교통비 및 우편요금 등을 실비 지급
- 위탁분석비
 -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「예정가격 작성기준」 <별표5> ‘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’에 따름

3. 사료평가에 따른 보상비

-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기준

등급	지급액(단위 : 원)		
	국외사료(면당)	국내사료(면당)	문헌 문집 등(건당)
S급	6,000	3,000	1,000,000
A급	4,000	2,500	700,000
B급	3,000	2,000	500,000

* 등급 : 국가유공자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에의 활용도, 학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사료평가위원회에서 각 사료의 등급을 평가

** 지급액 : 사료의 조사·발굴·수집 활동에 따라 기타 소요액이 발생된 경우 사료평가위원회의 승인 하에 별도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

- 평가등급 선정의 예외

- 사료의 학술적 가치, 희귀성 등에 따라 별도의 가격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사료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등급 외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4. 각종 자문료

-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시, ‘1. 사료평가위원회 등 각종 회의 참석 수당’에 준하여 수당 지급
- 사료의 대외공개 등 필요에 따라 사료의 학술적 가치, 기타 의견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시, 사료 건당 150,00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
 - * 다만, 해당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, 원어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, 분량이 과다한 경우 등에는 건당 자문료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